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충북 음성 가금 사육농가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1.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813('21.1.20.)호,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335('21.1.18.)호
2. 우리 부는 **충북 음성 산란계**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진되어 지자체,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발생/양성 확인 시·도

-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기 설정된 방역지역 별 살처분, 이동제한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 발생농장 및 보호지역(반경 3km 이내)의 사육 가금 및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 조치
 - 살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분변·먼지 등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 야생조수류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의 선시행 후 실시
 -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
- 발생 시·군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운영
-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 소독 철저
 - * 종축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전통시장, 부화장, 식용란수집판매업,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장 등

□ 이외 시·도

-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은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운영
- 발생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축산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전국 가금 사육농가 모임·행사 금지

□ 유관부처 협조사항

- (국방부) 지자체 요청 시 살처분·매몰·사후처리 지원 병력 및 제독차량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철새도래지 방문 관광 자제 대국민 홍보
- (경찰청)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차단방역 종사자(살처분, 매몰 등)에 대한 문진을 통해 질환 의심자 등은 살처분 참여를 배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보급 지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조치 대상 축산차량,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 시설 등을 확정하고 각 대상별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우리 부에 즉시 보고 및 해당 지자체 통보
 - * 지자체는 관련 고시에 따른 역학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및 역학 관련 가금 사육농가와 사료공장에 대한 검사 이행 철저
- 역학조사 결과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선제적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
- 발생농장은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부에 결과 보고
 - * (농장)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 난좌, 축주 신발, 퇴비사 등, (차량) 차량 바퀴, 운전석 매트 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고병원성 AI 발생 지자체, 방역대 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에 보고

□ 관련 단체(협회)

- 회원, 소속 계열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 후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SMS(문자메시지) 발송, SNS 게재, 공문 시달 등 홍보 철저

□ 관할 및 소속 모든 농가에 대한 문자 발송 홍보(전국 지자체, 가금관련 협회)

- 현재 상황 전파, 검사결과 및 발생상황 등 단계별 문자를 발송하여 가금농장 내·외부 및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독, 의심축에 대한 조기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의 모임 금지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철저' 홍보 실시

나. 특별방역강화 조치(적용기간: 별도 조치 시까지)

□ 해당 방역대 내 사전 예방 방역 조치 추진

- (농가 예방강화) 진입로·축사 둘레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입구 2중 소독조 설치(세척조+소독조), 산성 소독제 및 소독제 혼합 사용 금지, 외부인의 농장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 소독 및 방역복 환복 후 출입
- (출입제한) 가금의 입식·출하는 AI SOP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통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알 수집) 알(식용란·종란) 운반차량은 1일 1농가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장 밖 환적을 통해 수집(농가 내 차량진입 금지)
 - *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가 필수이며, 농장 진입 시 재차 소독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장 종사자에게 제시
- 해당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은 산성 소독제 사용 배제
- 방역지역 가금 사육농장 내의 사료·왕겨는 농장 밖 반출 금지

□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의 이동 시 출하 전 검사

-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 출하(이동)
 - 단,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는 제외
 - * 가금의 검사 방법은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름

□ 발생 시·군 소재 가금(산란계·종계) 사육농장 AI 검사 강화

- 기간/주기: 해당 방역대 해제 시까지 / 격주 1회 검사
- 대상: 발생 시·군 관내 산란계·종계 농가
- 검사 추진 현황은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 AI상황실*에 제출
 - * AI 상황실 온나라 메일(aitkdghkdtlf@mail.go.kr)

□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제한

- 기간: '21.1.20. ~ '21.1.26.
- 대상: 발생지역(충북 음성군) 내 사육 가금 및 가금 사육농장 종사자
- 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 이동제한 내역
 - 해당 시·군 소재 가금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용의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반출 금지
 - 해당 시·군 소재 가금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 금지
- 다만, 다음의 예외 적용 가능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축방역관 사전

승인 및 감독 하 반출·입 허용

- 도축장 출하 가금(본 조치 이전 도축 출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료 반입
- 식용란 및 종란 반출(주 2회로 반출 제한)
- 초생추 입식(본 조치 이전 입식이 사전 계획되어 있는 경우)

□ 발생지역(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등) 운영 중단

-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운영 중단함을 해당 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
 - *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 검역본부는 해당 지역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 추진 후 결과 보고
 - * 5일장 형태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짜에 맞춰 현장 점검 추진

- 붙임 1.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공문 1부
 2. 산란계·종계 사육농장 시 검사 실적 작성 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보건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제주 친환경방역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주무관	강호성	사무관	김준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1. 1. 20.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480	(2021. 1. 2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